

#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!

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, 교육위원회 위원 채수지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.

○ 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근거하여 위촉직 위원의 양성평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○ 이에 개정조례안에서 서울시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

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.

-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